

#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박 지 헌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3년 3월 3일

나. 회부일자 : 2023년 3월 6일

3. 제안이유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에 특히 취약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충청북도 도민의 건강 안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폭염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폭염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세계보건기구(WHO)가 21세기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폭염을 지목하였고, 우리나라도 폭염에 의해 열사병 등 온열

질환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사망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 비율이 전체 75%를 차지하여 폭염취약계층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음.

이에 매년 폭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대책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조례 제정의 정당성 및 적합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자연재난대책법」 제3조는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과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음.

#### < 자연재해대책법 >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5.(생략)

6. 폭염대책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계 구축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7. ~ 9.(생략)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는 「자연재난대책법」 제3조에 따른 폭염대책을 반영하여

충청북도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종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재난도우미의 지정·운영과 기상청에서 폭염 특보가 발령되었을 때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실시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9조는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냉방물품 보급 등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1조는 폭염을 저감하기 위해 도, 시·군 및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조례안 예고('23. 3. 8. ~ '23. 3.14.)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8년 10월 전남에서 관련 조례를 최초로 제정하여 현재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중에 있음.
- 관련부서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음.

####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례안은 총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실태조사, 폭염취약계층의 지원 및 폭염저감시설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문 내용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 6. 검토의견

- 폭염에 의한 인명피해는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 장소도 응급실 등 의료기관이 전체 50%로 나타

나는 등 매년 폭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바,

-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에 특히 취약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시책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안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 됨.